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01
----------	------

2017년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17년 2월 6일
- 다. 회 부 일 : 2017년 2월 7일
- 라. 상 정 일 : 제27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2월 2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욱형)

가. 제안 이유

시민들의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하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2) 마을세무사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3) 마을세무사 위촉 및 해촉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4) 마을세무사 활동 범위, 상담대상자, 상담방법, 상담 처리를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5) 마을세무사 수당 및 표창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반영 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11. 10. ~ 11. 30.)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서울시민의 권리증진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세무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241개동에서 자치구별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전국 지방세 규모가 최초로 70조(2015년)를 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지원하는 지방세정책의 발전은 복지를 비롯한 다른 행정분야보다 미흡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 ※ 국세청의 경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나 전국 111개 세무서를 활용한 세무상담 제도가 운영중이고, 법무부의 경우 2013년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논의될 정도로 계속 발전되고 있고, 정부3.0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에 따라 서울시민들에게 주민을 직접 찾아가 세무 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정 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안의 운영을 위한 기본 용어인 “마을세무사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정의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입법체계상 제2조에는 기본이념 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정의 규정을 둔 입법례도 있으나, 기본이념 규정과 정의 규정 중 어느 규정을 먼저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임.

- 다만, 제2조에서 기본이념을 규정하는 것 보다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령의 입법목적을 명시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체계와 논리성이 있다고 하겠음.

다. 역할(안 제3조)

- 동 조례안 제3조는 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②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 ③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 위탁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등 마을세무사의 수행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인바, 마을세무사의 구체적 역할을 열거함으로써 수행범위를 적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법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비롯한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의 지원에 대해서 건별 신청 및 청구 세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세무상담 등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도 상당한 바, 상담서비스에 대한 제약 요인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의 경우 전국시도를 기준으로하여 청구세액을 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라. 위 축(안 제4조)

- 안 제4조는 마을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위축과 임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마을세무사 위축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선정에 공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음.
- 다만, 마을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세무사를 경력이 3년이상으로 개업중인 세무사로 제한하는 것은 인력 재원의 가용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기를 2년,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이 세무서비스 전문성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세무사 자격〉

세무사법

제6조(등록)

-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략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해 촉(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마을세무사가 사임 의사표시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마을세무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됨.

바. 상담대상(안 제6조, 안 제10조)

- 안 제6조는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마을세무사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마을세무사 운영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세무사고시회간 제도 홍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사. 상담방법 및 상담결과 처리(안 제7조 및 제8조)

- 안 제7조는 세무상담을 ‘비대면 상담’과 ‘대면상담’, ‘사업장 방문 상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는 시장에게 마을세무사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규정이라 하겠음.

〈상담실적('15.1.~'16.12.)〉

연도	합계	상담종류(건)			상담방법(건)				불복 청구	자문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	전화	방문	메일	팩스		
계	5,917	5,176	267	474	5,052	773	78	14	2	4
'15년	2,168	1,815	127	226	1,780	344	36	8	2	4
'16년	3,749	3,361	140	248	3,272	429	42	6	-	-

아. 수당(안 제9조)

- 안 제9조는 마을세무사의 수당 및 여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세무사가 본인의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무료로 대면 상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마을세무사 상담수당 및 여비 비용추계 :11,500천원('18년 기준)

- 지급기준 : 상담수당 30,000원, 여비. 20,000원
- 지급규모
 - 상담수당 : 6,900천원 [30,000원 × 230건 = 6,900,000원]
 - 여 비 : 4,600천원 [20,000원 × 230건 = 4,600,000원]

※ 2018년 마을세무사 활동 실적(추계)

구 분	총상담(건)	현장상담(건)	비 고(산정기준)
계	4,574	230	총상담 : '16년 기준 매년 10% 증가율 적용 현장상담 : 총상담건의 5% 적용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601
----------	------

제출년월일 : 2017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민들의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하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마을세무사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마을세무사 위촉 및 해촉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마을세무사 활동 범위, 상담대상자, 상담방법, 상담 처리를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 마. 마을세무사 수당 및 표창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반영 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 11. 10. ~ 11. 30.)결과 : 의견 없음
- (2) 비용추계 등 자료 : 별도 붙임

※ 작성자 : 세제과 세제정책팀 김병철 (☎ 2133 - 3354)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시의 위탁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3조제2호의 불복청구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치구 협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실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